

「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19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, 김민성 의원 (2인)

다. 찬 성 자: 김낙관, 김원섭, 김재우, 김춘남,
소진혁, 양진오, 장미경, 정지원 의원 (8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9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11월 25일

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양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외교행정, 통·번역 국제교류 및 국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예 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재 환

○ 본 조례안은

- 해당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와 기관 간 원활한 소통 및 업무 협력을 위해 외교행정, 통·번역, 국제교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,
- 2025년 9월 20일 체결된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공식 상호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, 이에 대비해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이 필요해 보임.
- 조례안 전체적인 내용상 흠결이 없고 상위법령 또한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에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